

**보성녹차한산모시...'지역 특산품' 지리적 표시 등록표지로 확인하세요**

- 지식재산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시범운영 실시(~12.31) -
- 소비자는 등록상품을 쉽게 확인하고, 권리자는 등록사실을 효과적으로 홍보 -

보성녹차·이천도자기·한산모시 등은 지역의 특성과 명성을 바탕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돼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대표적인 지역 특산품이다. 다만 소비자가 이러한 상품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품인지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 역사적 명성이나, 독특한 품질이 있는 지역특산품의 상품명칭을 권리로 보호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특산품 상품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소비자가 이러한 등록상품을 쉽게 알아보고, 권리자가 등록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이하 '등록표지')를 마련해 9. 7.(월)~12. 31.(목)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 등록표지

새롭게 마련된 등록표지는 대한민국의 산천(山川)을 곡선으로 형상화하여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출처를 표현한 것으로, 상표권자 의견수렴과 디자인 전문가 자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최종 확정됐다.

등록표지의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상표권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식재산처는 등록현황을 확인한 후, 등록표지 디자인 서류와 사용기준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 알림사항-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산자의 비법이 축적된 지역특산품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제도”라며, “이번 등록표지가 소비자에게는 등록상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기준이 되고, 권리자에게는 등록상품의 차별화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지역특산품의 신뢰와 상표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시범운영 공지문

|      |          |     |     |                    |
|------|----------|-----|-----|--------------------|
| 담당부서 | 상표디자인심사국 | 책임자 | 과 장 | 김지맹 (042-481-5265) |
|      | 상표심사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윤세균 (042-481-5266) |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시범운영 공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 및 정당한 사용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이하 ‘등록표지’)」의 시범운영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6년 9월 7일

지식재산처장

### □ 등록표지 도입 목적

- 소비자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품을 쉽게 확인하고, 관리자가 등록 사실을 상품·포장·홍보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등록표지 마련
- 등록 및 정당한 사용 사실을 공통된 방식으로 표시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식별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특산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 지원

### □ 등록표지 디자인

국내용



해외용



### □ 시범운영 개요

- (목적) 정식 제도 시행 전 실제 유통환경에 등록표지를 적용하여 현장 활용성과 사용·운영상 문제점을 사전 검증
- (기간) 2026년 9월 7일 ~ 12월 31일
- (대상) 등록표지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권자
- (사용분야) 등록된 지정상품 및 그 포장재, 홍보물, 온라인 판매페이지 등

##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시범운영 참여신청서 1부
- (참여단체 확정) 등록현황 확인 후 개별 통보하며, 확정된 참여단체에 디자인 파일과 사용기준을 제공

## □ 참여자 준수사항

- 등록된 지정상품에 한하여 사용하고,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
- 표지의 비율·색상·형태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음
- 등록표지는 지식재산처가 해당 상품의 품질을 인증·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등록표지의 사용은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사용권한과 이 공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음
- 상표권 소멸·취소·무효 또는 사용자격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함

## □ 운영 및 사후관리

- 지식재산처는 시범운영 기간 중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부적정 사용이 확인된 경우 경고·시정요청, 사용중지 요청, 표지제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본 시범운영은 정식 제도 도입 전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시적 운영으로, 법적 기반 마련 후 정식 운영체계로 전환할 예정임

## □ 문의처 :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천경호 주무관

전자우편(ipbez3152@korea.kr), 유선전화(042-481-5377)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